

농지법기출문제

- 2025/26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
- 2024년 포함 20년 기출 지문 수록
- 최근 1~2년내 개정된 법령 내용 포함
- 기출문제 관련 내용 포함, 20분 완성



엠틱,권리아 mbook.kr

도서명 : 농지법 기출문제

ISBN: 979-11-7393-057-7

발간일: 2025-07-29

형식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: https://www.mbook.kr/

이메일: by4782@gmail.com

정가: 3,500원

농지법 기출문제

[목차]

제1장 총칙(p4)

제2장 농지의 소유(p9)

제3장 농지의 이용(p16)

제4장 농지의 보전 등(p21)

제5장 보칙·벌칙(p40~43)

[약어]

<u>경작</u>은 농작물 <u>경작</u>

재배는 다년생식물 재배

<u>시군구</u>는 <u>시</u>장, <u>군</u>수, 자치<u>구</u>의 구청장 또는

시, 군, 자치구

강의교재 mbook.ki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노란색 형광펜은 암기코드 등

하늘색은 20년(2005~24)간 공인중개사

기출문제 지문

- 붉은색은 중복 출제문제 지문

초록색은 최근(1~2년내) 개정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www.mbook.kr)

제1장 총칙

1~5조

1. 농지

- 1) 전/답, 과수원과 법적 지목 불문 실제
- 경작지 또는 다음 다년생 식물 재배지
- 목초, 종묘, 인삼, 약초, 잔디, 조림용 묘목
- 과수, 뽕나무, 유실수, 생육기간 <u>2년</u> 이상인
- 식물
- 조경, 관상용 수목/묘목(단, 조경목적 식재

<u>제외</u>)

- 다음은 제외
- · 전/답, 과수원아닌 토지로서 경작/재배 계속
- 기간 <u>3년</u> 미만
- · 임야로서 산지전용허가(의제)없이 경작/재배
- 초지

- 2) 토지 개량시설 부지
- 유지, 양배수시설, 수로, 농로, 제방
- 계단, 흙막이, 방풍림
- 3) 다음의 <u>농축산물 생산시설</u> 부지
- 비주거 목적 <u>20</u>제곱미터 이하 농막
- 200톤 이하 간이액비저장조 등

- 33제곱미터 이하 간이저온저장고

- 2.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
- <u>1천</u>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경작/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
-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고정식온실,
- ___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시설을

설치해 경작/재배

- 대가축 <u>2</u>, 중가축 <u>10</u>, 소가축 100, 가금 <u>1천</u>,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
- 이상 축산업 - 농산물 연간 판매 120만원 이상
- 3. 농업법인
- 영농조합법인
- 업무집행권자 중 <u>1/3</u>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
- 4. 위탁경영
-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 보수 지급 약정, 농작업 전부/일부 위탁

- **5. 농지개량**(25년 1월 3일 시행)
-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농지 형질을
- 변경하는 다음 행위
- ·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구획 정리,
- 개량시설 설치
- · 토양개량, 관개, 배수, 농업기계 이용 개선을 위해 객토, 성토, 절토, 암석 채굴
- 6. 농지의 전용
- (<mark>방풍림 등</mark>) 토지개량시설,
- 농축산물생산시설로 사용시 제외
- 7. 주말체험영농(이하 주말영농)

-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 취미/여가활동으로 경작/재배
- 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www.mbook.kr)

제2장 농지의 소유

6~13조

- 1. 농지 소유 제한
- 가) 다음은 농지 소유 가능,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(이하 농취증) 불요
- <mark>국</mark>가/지자체
- <mark>상</mark>속, 상속인에 한 유증
- <mark>담</mark>보농지

강의교재 mbook.kr

- (지방공사사장이 아니라)
- **장관**)과 농지전용<mark>협</mark>의 마친 농지

주무장관/지자체장이 **농림축산식품부장관**(이하

- · (비교) 농지전용<u>신고</u>한 자는 농취증 필요
- 한국농어촌<mark>공</mark>사
- 농어촌<mark>정</mark>비법에 따라 취득
- <mark>매</mark>립농지
- 토지<mark>수</mark>용

취득

- 장관과 협의 마치고 토지<mark>보</mark>상법에 따라

- 나) 다음 취득시 <u>농취증 불요</u>
- <u>농업법인 <mark>합</mark>병</u>
- 공유 농지 <mark>분</mark>할